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박용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81 발의연월일: 2020. 6. 16.

발 의 자: 박용진 · 이소영 · 정성호

박재호 • 이학영 • 용혜인

기동민 • 민병덕 • 송옥주

전용기 · 정춘숙 의원

(11일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TV홈쇼핑, 대형마트, 백화점, 일부 온라인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「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 업체의 판매수수 료율을 공표한 바 있으나, 이들과 유사한 판매행위를 하지만 해당 법률의 적용 대상이 아닌 포털사이트와 오픈마켓 등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.

이렇듯 유사한 업태의 업체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법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거래실태의 조사 및 공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규율 대상을 특정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일정한 거래분야의 거래실태 등을 조사하여 발표할 수 있는 서면실태조사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50조의5 신설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0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5(서면실태조사)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 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를 실시하여 그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- 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위, 조사기간, 조사내용, 조사방법,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조사대상자에게 거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- 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의 범위와 내용, 요구사유,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

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 0조의5를 제50조의6으로 한다.

제69조의2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.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법률 제1729 0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6의 개 정규정은 2021년 5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50조의5(서면실태조사) ① 공정
	거래위원회는 일정한 거래분야
	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
	하여 해당 거래분야에 관한 서
	면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조
	사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	② 공정거래위원회가 제1항에
	따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려
	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의 범
	위, 조사기간, 조사내용, 조사방
	법, 조사절차 및 조사결과 공표
	범위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
	여야 하고, 조사대상자에게 거
	래실태 등 조사에 필요한 자료
	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	③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항에
	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
	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자료
	의 범위와 내용, 요구사유, 제
	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
	로 알려야 한다.
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	법률 제17290호 독점규제 및 공
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	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

률

<u>제50조의5</u>(조사시간 및 조사기간) (생 략)

第69條의2(過怠料)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하, 회사 또는 사업자단체의 임원 또는 종업원, 그밖의 이해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.

1. ~ 8. (생 략) <신 설>

②·③ (생 략)

률

트
<u>제50조의6</u> (조사시간 및 조사기간)
(현행과 같음)
第69條의2(過怠料) ①
1. ~ 8. (현행과 같음)

- 9. 제50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
- ②・③ (현행과 같음)